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7월 1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2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### 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### 나. 추정개요

1) 추경예산 : 621,40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40,372,057천원 (기 출연금 39,750,657천원)

#### 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 : 470,000천원
-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 : 21,400천원
-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 : 100,000천원
-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: 30,000천원

#### 2) 추경필요성

-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

· '94년 구매 설치한 터보냉동기(내용연수 10년)로,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공연장의 안정적인 냉방 공급을 위해 교체가 시급

\* '19년 냉방가동 중 누유사고 발생으로 긴급점검 시행한 결과, 노후상태가 심각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해 수리 불가 판정 받음

- 방재실 휴게공간 조성 공사

- 현재 운영 중인 방재실 휴게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항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여 개선 필요

\* '22. 4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적사항으로, 8월까지 미개선 시 과태료 발생 우려

- “예술로 동행” 확대 운영

- 서울시 주요 시정사업인 ‘약자와의 동행’과 연계, 서울시 예술단이 병원,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5회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및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

\* 예술로 동행: (당초) 17회 → (확대) 22회

- “천원의 행복” 확대 운영

-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제공이라는 사업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대중적인 공연으로, ‘엄마·아빠행복 프로젝트’와 연계하여 현재 20% 수준인 문화소외계층 초청 비율을 30%까지 확대 운영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 $m^2$ , 건물 64,094 $m^2$ 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·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### 3) 전경 및 위치도

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